

의안번호	2211349
의 퇴 인	이상식의원
회 답 일	2025.8.4.
추 계 번호	25D3455
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,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할 경우, 2027년 4억 8,200만원, 2031년 1,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5억 2,200만원 (연평균 1억 4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472	—	—	—	—	472	94
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운영 (안 제17조)	10	10	10	10	10	50	10
합계	482	10	10	10	10	522	104

주: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)	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0조 (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 등)	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주행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	의무규정
3	안 제11조 (자율주행 교통정보의 제공 등)	경찰청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제1항 ¹⁾ 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·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·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3조 (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조사)	경찰청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6항 ²⁾ 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4조 (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)	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,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5조 (국제협력)	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인력의 국제교류, 국제표준화,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7조 (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)	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경찰청에 둬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(경찰청장)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	의무규정

1)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(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(이하 "교통안전시설"이라 한다)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유료도로법」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2)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(사고발생시의 조치)①~⑤생략

⑥ 경찰공무원(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(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)	○	—
2	안 제10조 (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 등)	X	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의 출연금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출연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11조 (자율주행 교통정보의 제공 등)	X	교통안전시설에서 제공한 정보를 송·수신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4	안 제13조 (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조사)	X	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량, 교통사고 조사 분석 인력 증원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5	안 제14조 (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)	X	경찰청은 이미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(2025년 예산안 기준 185억원)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, 제정안에 따라 기존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6	안 제15조 (국제협력)	X	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규모, 행사 개최 횟수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7	안 제17조 (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(안 제5조),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(안 제17조)에 한하여 추계
-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,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계
-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정책연구용역 비용은 2021년 기준 4억원이고, 본 추계에서는 이를 유사사례로 활용하며, 정책연구용역 비용에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- 추계결과, 경찰청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7,200만원으로 예상됨

[표 2]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	472	-	-	-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운영(안 제17조)

- 본 추계에서는 경찰청에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50%인 10명이며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경찰청이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000만원(=10명×4회×25만원)으로 예상됨

[표 3]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운영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운영	10	10	10	1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8,200만원, 2031년 1,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5억 2,200만원(연평균 1억 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	472	-	-	-	-	472	94
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운영	10	10	10	10	10	50	10
합계	482	10	10	10	10	522	10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등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